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안) 검토의견

2004. 4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목 차 -

1. 검토의견 -----	1
1.1. 해양수산 비전 -----	1
1.1.1 청색혁명 구현 -----	1
1.1.2 해양환경보전정책의 독립성 강화 -----	2
1.1.3. 현안문제해결을 통한 청색해양국토 조성 -----	2
1.1.4. 현안문제 해결계획 수립 -----	4
1.2. 해양자원 개발과 이용 -----	5
1.2.1. 수산자원 -----	5
1.2.2. 해수용존 및 해저자원 -----	6
1.2.3. 해운·물류 -----	6
1.2.4. 첨단해양과학기술 -----	7
1.2.5. 해양문화·관광 -----	8
1.3. 공해 및 연안·도서국 해역 진출 -----	9
1.4. 해양수산외교 -----	10
1.5. 기타 -----	11
1.5.1. 지속가능한 해양의 관리를 위한 법·제도·조직 정비 -----	11
1.5.2.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	12
1.5.3. 기후변화협약 대비에 능동적 대처 -----	12
2. 결 론 -----	13

1. 검토의견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안)은 7개 추진전략(1. 생명·생산·생활의 해양국토 창조, 2.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3. 지속가능한 수산업기반 구축, 4. 동북아 해운·물류중심지 구축, 5. 첨단 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산업화, 6. 해양문화·관광기반의 체계적 확충, 7. 전방위 해양수산외교 및 남북협력 강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획의 세부내용이 중복된 점을 고려하여, 각 전략을 검토한 후 해양수산 비전, 해양자원의 개발과 이용, 공해 및 연안·도서국 해역 진출, 해양수산외교, 기타 등으로 대별하여 정리하였음

1.1. 해양수산 비전

(생명·생산·생활의 해양국토 창조/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조성)

1.1.1. 청색혁명 구현

해양으로 거세게 밀려오는 개발의 압력을 극복하고 청색혁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 우리 해양의 경제적 가치의 재평가

- 세계해양 총면적의 0.7%에 달하나 세계해양 가치의 0.4%로 평가됨
- 갯벌을 포함한 해양의 생태적, 환경적, 경제적 재평가가 있어야 함
- 해양생태계를 뒷받침하는 기반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갯벌, 특히 하구갯벌을 잘 보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임. 그러나 아직 하구갯벌을 비롯한 연안 갯벌의 생태적인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갯벌의 역할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이와 아울러 육지의 그린벨트처럼 절대적으로 보전되어야 할 해양생태계보전지역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임

□ 환경파괴로 인한 연안의 현안문제 검토

- 대형 간척매립공사와 발전소 온배수 배출로 연안생태환경은 지속한계를 초과하였고 해양수산물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음
- 기존의 해양환경보전과 복원 계획의 실효성 평가

- 이를 근거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전략 수립
 - 정책에 해양환경보전의 원칙과 기준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평가를 위한 지속가능성 지수 개발이 필요함
- EEZ의 관할권 강화
 - EEZ 선포로 관할해역은 12 해리 영해역보다 4.3배 확대
 - 통일 대비, 남북한 EEZ 보전관리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계획은 긍정적이나 보다 적극적 계획 수립(남북한 EEZ 면적은 약 680,000 km², 국토의 3.1배)
- 청색혁명의 국민의식 고취를 위한 해양문화의 발굴·보전과 창달
- 기본계획안의 수립배경을 ‘자원의 보고인 해양을 합리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 제시 필요’ 라고 기술하여 아직도 개발과 이용을 앞세우고 있는 바,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하여는 우선 보전되어야 할 곳을 보전하고 난 후에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용이 있어야 할 것임
- 본 기본계획(안)이 매 3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실천 가능한 가시적인 계획과 기초정보의 파악에 초점을 맞추어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중점적인 실행과제 설정에 주력해야 할 것임

1.1.2. 해양환경보전정책의 독립성 강화

- 청색혁명을 위해서는 개발부처에서 해양환경보전부처로의 위상정립을 위한 정책개발과 해양환경을 위한 조직보강 필요
- 환경보전 분야 강화
 - 2001년 총 23,371억원 중 해운항만·수산부분 예산은 20,644억원, 환경보전 및 연안관리 예산은 508억원으로 개발위주 예산의 40분의 1수준에 불과함
- 해양보전관리를 위한 구체적 기본조사계획 수립
 - 전문가/주민/NGO 참여의 전국 동시관측체계 구축 및 조속 시행

1.1.3. 현안문제 해결을 통한 청색해양국토 조성

우리 해양은 수산자원의 개발과 이용이 근간산업으로 이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보전과 복원대책이 시행되어야 함

- 연안은 과도한 개발로 심각한 환경 역전현상이 진행 중임
 - 발전소 온배수와 대기배출물질 관리대책(온배수는 총 18개 발전소로부터 한강유량의 약 7배, 대기배출물질은 서울시 배출량의 수 배로 해양생태계와 기후 변화의 주 요인 중의 하나로 추정)
 - 새만금, 시화호, 화옹호 등 갯벌매립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외해역 생태계 복원 방안 수립
 - 해양생태계를 조절하는 하구역과 갯벌의 복원을 위한 하구언의 기능 제고(육지 근원물질의 자연유입)
 - 오염물질 연안배출 규제와 더불어 연안 하·폐수배출구 재배치 계획수립 (특별관리해역, 해수유동특성 파악 등 과학적 조사를 근거)
 - 바다모래 채취량과 연안침식·수산자원 감소간의 관계 규명에 따른 바다모래 적정생산 대책 수립

- 지속적인 수산업 유지를 위해 모니터링 위주의 관리보다는 복원을 목표로 하는 계획 수립

- 공공기관의 해양오염 및 환경파괴를 규제할 수 있는 대책

- 다양한 개발과 환경보전간 계획의 조정·통합
 - 유사 목표의 계획 통합관리체계 필요(예, 주요 어장의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연안어장 정화사업)
 - 육상기인 오염물질의 유입저감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유역관리계획과 오염 총량관리제도의 도입
 - 해양폐기물 이외의 해양활동 기인 오염물질 관리대책
 - 환경수용력을 고려한 사전 예방적 관리대책, 해양환경관리 의사결정체계, 위해도 평가체계 구축
 - 민간(어민 및 NGO)이 참여하는 조사·감시·평가의 지역적-광역적 연계 필요
 - 육상 및 해양기인오염물질(납추, 가두리 양식장, 바다쓰레기 등) 등 총체적인 오염원으로부터 연안오염의 가속화를 예방하고, 연안환경을 회복하기 위한 시책이 필요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지방분권화에 따라 가중되는 연안개발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안보전·관리계획 수립

- 해양문화정책의 주체성 확립 및 담당조직 보강
 - 해양·도서문화의 발굴·보전 및 관광자원화
 - 해저 침선 및 유물 조사 및 관리(문화재청 협의, 침선관리법 제정, UNESCO 수중유물보호협약에 따른 해저유물에 대한 국제간 갈등 대비)

1.1.4. 현안문제 해결 계획 수립

- 정책평가체계 개발 필요
 - 기존의 계획과 제도의 시행성과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 계획 수립과 변경에 활용할 수 있는 계획 수립
 - 계획이 연안·해양환경에 대한 타 부처의 계획과의 연계된 성과확인에 따라 실행부처 확정
 - 평가를 통한 ‘해양수산 발전지표’의 선정으로 실적위주 성과보다 내용적인 성과 확인(예, 특별관리나 해양보호지역의 숫자와 같은 외형적인 실적(output)보다 실질적인 성과(outcome) 도출)
-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관리지역계획, 해양환경관리계획(환경관리해역)을 통합연안·해양환경관리로 일관성과 지속성 유지
- 개발된 각종 기술의 활용
 - 육상/대기/해수/해저지질/해양생태계 오염 통합관리체제의 구축은 신기술 개발이 필요하기보다는 개발된 관측기술의 통합운영 실시계획이 필요
- 동시성 확보 가능한 연안·해양통합관리 계획
 - 첨단기법(인공위성/항공/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한 관측은 전문가
 - 현장관측은 지역별 어민/NGO/전문가 등 국민적 참여 유도(어민/NGO-갯벌 및 연안 관측, 전문가는 교육/자료의 해석, 정부-지원)
- 수산자원 감소원인의 종합조사(바다모래채취, 갯벌감소, 오염증가, 온배수, 기후 변화 등)를 통한 대책 마련

- 3년마다의 연동계획이라는 점에 지나치게 고무됨으로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야기될 소지까지를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연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나, 사업의 문제점이 발견되는 시점에서 이미 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사업 등은 연동과 별도로 분리되어야 할 것임

1.2. 해양자원 개발과 이용

1.2.1. 수산자원

-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
 - 지속적인 수산자원 생산은 친환경적 자원관리형 어업이어야 함
 - 자율관리에 의한 해역별 통합관리 체제 구축
 - 어업제도의 체계화 및 현실화(수산관련 법규 정비)
- 기존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재검토
 - 인공어초사업, 수산종묘방류, 바다목장화 등 해역통합운용관리체계 구축
 - 해역별 자율관리시 개인면허 양식장의 점진적 소멸 대책
 - 어장회복용 산란과 생육장 조성을 위해 모래자원채취 재고 및 모래 능 자연 형성 적지 선정·시행
- 환경수용력 및 수급을 고려하여 전 양식장의 양식현황의 네트워크화로 생산, 유통, 질병관리, 기술지도 통합
-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수산물의 고급화 및 생산자 품질보증제, 수산물 수입품의 안정성 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네트워크 구축
- 수산기초통계의 확립을 모든 수산물 생산과 판매 등록실시와 수산물의 바코드화 추진
- 최신 수산기술보급을 위해 어촌 네트워크 구축으로 수산물생산, 가공, 해양 환경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활용대책 수립 필요

- 각 해역별 연안형 어업·관광(유어) 겸용 고성능선박 개발
- 종 다양성 보전과 신어종 개발과 신물질 개발을 위한 수산물 및 해양생물 종 보존 및 생명은행 설립(유전자변형생물체(LMO)와 해양생물자원의 DB화는 중복)
- 친환경적 수산어업기술을 수산자원량과 해양생태계의 변화 모니터링에 연계 활용방안
 - 신기술의 어법보다는 남획 어구어법의 철저한 통제 및 어민제도계획이 필요 (첨단기술개발보다 기존의 확립된 기술검토 적용)
- 수산자원 감소원인 분석에 “어린고기를 잡지말자” 캠페인 전개를 포함하고, 해양생물보존을 위해 어린고기를 잡지 않는 업소에 대한 지원금 제도 도입 등 검토 필요

1.2.2. 해수용존 및 해저 자원

- 해수용존 자원 개발은 연구 단계이므로 개발연구 선행 계획 필요
- 에너지자원의 탐사와 개발은 산업자원부가 주도하나 해양수산부의 주체추진 계획 필요
 - 우리나라 EEZ내 서해와 남해 대륙붕에는 석유나 가스, 동해 심해에는 메탄수화물자원이 부존
 - 메탄수화물은 차세대 청정에너지 및 기후조절의 중요 요소로 평가
- 대륙붕의 매우 빈약한 유용광물자원의 개발은 다량의 바다모래를 채취와 선광으로 환경파괴의 역기능을 초래함

1.2.3. 해운·물류

- 항만수요의 재추정으로 항만개발의 규모와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부산신항과 광양항의 개발규모와 시기
 - 일본, 중국 등의 항만개발계획에 따른 공급확대,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재편과 생산기지 중국이전에 따른 물동량 수용수요 감소 등 반영
 - 동북아 해운·물류중심지 구축을 위해서는 부산, 광양항 등에 막대한 예산투입을

통한 허브포트 건설도 중요하지만 기존 항만시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항만운영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필요

- 제도적 기반 조성으로 해운거래소(Shipping Exchange), 해사중재원 등의 설립을 통한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해운·물류 네트워크 구축 및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해 연안해운의 운송 부담률 제고를 위한 항만시설 확충 및 항만운영효율 증대 등의 방안이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도로교통중심에서 연안해운중심체제로 전환하여 자동차로 인한 과도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도로 건설비용을 줄이는 방안 검토 필요
- 한·일,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추진이 우리나라 해운·물류 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마련 등 국제해운협력부문의 보완이 필요함

1.2.4. 첨단해양과학기술

- 첨단산업기술의 해양 접목 계획은 의욕적이나 산업화를 위해서는 국내·외 기술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
- 해상 및 해저구조물의 첨단산업을 접목한 기술은 민간주도형으로 개발이 가능하나 해양 탐사와 개발을 위한 장비기술개발은 국내·외 수요예측에 따라 연구 투자하여야 함(특히, 국내시장 협소)
- 세계적으로 퇴출압력을 받고 있는 원자력 발전 플랜트보다는 대체에너지 발전 연구가 필요하고, 해양에너지 지표를 단계적으로 강화 필요
- 해양생물자원 탐색 및 활용기술 개발
 - 심해의 호압성, 열수구의 초호열성, 심해저 및 극지의 저온성, 고염환경의 호염성 등 특수환경에 적응된 고유 해양생물종의 확보·보존·배양 기술개발
 - 생물자원의 유전정보 시스템, 일반 해양생물 및 극한미생물 유전체의 기능 분석을 통한 산업적 활용기술 개발
 - 해양생물체의 대사경로 규명 등을 통한 항암 및 항바이러스제, 생리활성 물질,

천연물 신약 등의 생산 기술 개발

□ 해양생물 소재 및 생물공정기술 개발

- 해양생물 유래 신기능 단백질, 바이오폴리머, 정밀화합물에 대한 탐색, 성능분석 기술, 유전자 재조합기술, 대량배양기술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신규 특수 기능소재의 개발
- 유용물질 생산을 위한 해양생물의 고농도 배양기술, 생리활성 물질의 분리정제 기술의 개발

□ 해수발전을 위해서는 국내외의 기초적인 인프라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계획과 연계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해양기술의 첨단화는 현실적인 상황과의 괴리를 염두에 두고, 첨단화가 가능한 분야에 집중투자, 개발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설정 등 기본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1.2.5. 해양문화 · 관광

□ 종전의 해양문화 · 관광기반의 체계적 확충을 통해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는 미래형 산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의지를 나타내어 바람직한 대응으로 평가됨

□ 주5일 근무제의 도입 · 확대와 소득의 증가로 더욱 발전할 성장산업이며, 전통적 관광에서 생태형, 체험형, 모험형 등으로 다변화 진행 중(World Watch 2000년, 26% 신장산업)

□ 해양관광산업의 기반은 '환경'임. 생태관광, 지속가능한 관광, 녹색관광 등 환경 친화적이며 자원보전형 관광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고려

□ 해양관광의 활성화사업은 현재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관광벨트사업과 연계하여 상호협조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해양 문화 · 관광기반의 확충으로 과도한 집적과 선점식 개발 우려

- 대부분의 사업이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주로 어촌)에 기반
- 한계상태에 이른 연안권역의 환경, 경관 등 자연자원의 이용에 있어 추상적

선언이 아닌, 보다 분명하고 구체성이 담긴 보전과 이용, 그리고 개발 원칙이 명시되어야 함

- 난개발 방지에 대한 보전정책의 보완
 - 민간자본 유치나 민간투자에 의존할 경우, 공유수면 점용·매립 불가피
 - 연안의 보전과 이용, 개발에 있어 기본법적 위치에 있는 연안관리법의 연안통합 관리계획이나 연안정비사업 등과의 상충이 예견되므로 기존의 항만법 등이 가지는 특별법적 우위와 예외적 법 적용을 위한 법률 정비
 - 각 지자체의 개발계획을 국가적, 거시·중장기적 일관성을 조정·제어할 제도와 기존 자원의 활용극대화나 재정비 또는 재개발을 통한 자원과 유산의 보전에 각별한 정책 요구됨
 - 대단위 시설중심의 해양관광개발은 해양 문화와 자원의 멸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 전에 조사연구와 보전대책 등 수립

- 시설중심적인 기반조성보다는 연안역 자연환경, 민속, 해저문화재나 유물 등의 활용으로 문화자원의 해양관광산업화 추진 필요
 - 연근해 유·무인도서의 자연 친화적·문화자원 보전형 이용 및 개발
 - 특히 연안크루즈를 통한 관광자원의 사업다양화에 대한 정책 지원
 - 해상안전과 경관보전을 위한 도서 및 해안표착 쓰레기처리 대책 등 연계·보완 필요

- 외국인 유치를 위한 연안갯벌 체험과 내륙휴양시설 연계할 수 있는 체험관광 마을 조성에 대한 검토

- 건전하고 교육적인 관광사업 진작(사행성이 강한 경정사업 등은 재고)
 - 박물관 등의 건립과 전시계획은 하계 이외의 관광자원화 계획이 필요
 - 해양홍보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연안역의 시민단체/학계/어민들의 네트워크 구성 지원
 - 해양관광에 어민들의 직접 참여와 지역역사에 대한 자긍심 부여책 필요 (갯벌생태학습·해양탐구학습에 직접 참여 방안)

1.3. 공해 및 연안·도서국 해역 진출

- 국가사업과 민간사업의 구분에 따라 시행과 지원정책 필요

- 국가사업 : 심해저 광물자원/에너지 자원/극지
- 민간사업 : 원양어업 및 신물질 자원

신어장 및 자원 개발 개척

- 극지, 캄차카 주변해의 수산자원과 함께 해저자원(메탄수화물) 러시아와 공동 개발 연구추진
- 극지자원 개발은 세계추세와 남극보호협약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 2010년부터 본격적인 상업생산을 위해서는 해양자원개발촉진법을 조기 제정 하여 민간기업의 참여 유도
- 망간단괴, 망간각, 열수광상은 인도, 중국, 우리나라에서만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므로, 선행투자국들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
- 심해저 탐사기술은 해양바이오 기술개발의 기반기술로 활용하는 방안

국제해양시추프로그램(IODP)

- IODP는 지구과학의 종합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과학기술부가 주관할 필요가 있음
- 영해(동해)에서 유치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과학발전에 기여할 것임

1.4. 해양수산외교

전반적으로 해양수산외교업무의 실무중심적 실행계획임

국제관계설정계획에 범지구적 또는 광역적 해양수산 협력체제 구축을 시도하기 위해 구체적 방법 제시 필요

특히 해운협력 및 남북협력 관계에 있어서는 매우 발전적인 환경분석과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EU 등의 해운분야 블록화에 대비한 동북아 해운협력체제 그리고 수산 분야의 협력체제 구축과 동북아해양협력기구 창설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이나, 개발도상국 특히 원양어업 어장 보유국이 많은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계획이 미흡함

- 해양수산외교의 여건변화에 대한 문제점 인식이 다소 소극적, 수동적이며, 과감한 능동적 해양수산외교의 추진방향 및 계획이 미흡함.
- 특히 계획의 추진방향이 선진국과 국제기구에 치우쳐 있어, 개도국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포용에 대한 계획 추진이 요망됨
- 주변해양을 넘어선 대양진출을 대상으로 하는 범지구적 또는 광역적 해양수산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시도가 미비함
- 해양선진국들의 대양진출을 위한 투자에 비교해 볼 때 본 계획상의 해양수산외교는 장기적 측면에서의 정책수립과 실행계획 마련은 다소 미흡함
- 해양수산외교 부분에서 수산이나 해운협력은 강조되고 있지만 해양영토결정을 위한 준비와 과학자들 간의 국제공동연구를 마련하는데 지원하는 부분이 약함
- 실질적 국제협력 유도
 - 랍사협약의 이행 및 랍사습지 등록·관리를 위한 노력
 - 황해보전을 위한 남북 및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와 중국 측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1.5. 기 타

1.5.1. 지속가능한 해양의 관리를 위한 법·제도·조직 정비

- 공유수면 매립 등 개발의 근간이 되는 법률 및 제도의 정비 추진
- 연안·도서·해저 문화유물 관리를 위한 부처간 조직 정비 및 법·제도 마련
- 해양환경기본법 등의 제정
- 정책실현시 이해당사자와 민간 참여, 해양환경교육 기반강화를 위한 제도마련
- 국가해양관측망과 기타 방법으로 획득된 해양과학정보를 담당할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에 해양대기기상청과 같은 역할을 포함하는 조직이 필요하고, 해양오염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내 실질적인 해양오염예방

담당조직의 신설 필요

- 제도, 법, 인력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타 분야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바, 실현가능한 종합적인 정비 및 육성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1.5.2.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 정확한 예측과 대안이 필요(예, 해양과학기술자, 2000년 1600명/2005년 4000명)
 - 수요/공급 불균형 심화(수요 과다/공급 과다)
 - 주도적 해외 공동연구를 통한 전문가 양성
 - 연구소, 대학 등 전문인력 부족사태 대비
 - 잉여 전문인원의 연안역 지자체 배치 등
- 어민의 정보공개, 전달, 이용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1.5.3. 기후변화협약 대비에 능동적 대처

- 우리나라 수온과 육지 기온 상승률이 여타 연안국보다 2~3 배 빠름
 - 육지와 연안의 산업화에 기인한 것도 있지만 발전소 온배수 배출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
- 미국은 메탄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는 NASA 산하 Goddard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교토 기후변화협약의 비준 거부하였으며, 러시아도 거부하는 등 기후변화 협약의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있음
 - 미국은 다량의 메탄을 배출하는 농논사 위주의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주장
 - 영국과 불가리아는 변화하는 자국 해양 영해에서의 메탄 배출량을 이미 산정하였음
- 메탄의 기후변화 기여도 산정을 통해 기후변화 협약 대비
 - 메탄은 수화물 또는 유리가스 상태로 존재
 - 메탄수화물을 자원으로 분류되어 산업자원부가 탐사를 주도하고 있으나, 통해 지구기후 조절자로 분류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가 주도할 필요가 있음
 - 메탄은 갯벌을 포함한 해양의 오염정화 능력 측정과 해저석유자원 탐사의 기법으로 연구대상임

-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비에서 전지구와 동북아시아권의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한 자료들이 해양에서 도출됨을 강조해야 함

2. 결 론

- 3년마다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안)에 대한 연동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의 여건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임
- 21 세기 해양수산의 비전으로 “청색혁명”을 제시하고 있으나 환경의 지속성을 근간으로 하는 개발(항만과 물류, 해양첨단산업, 관광산업) 정책 수립의 기본개념 정립(보전과 개발·이용간의 조정·통합 체계)할 필요가 있음
- 중복된 세부계획들은 재조정이 필요하고 타 부처와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계획들은 실행주체가 명확치 않아 계획시행의 지속성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
- 해양에 대한 첨단산업기술 접목계획이 항만·물류부분에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나, 그 외 부분은 미흡하므로 국내·외 현황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 계획 시행성과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를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평가체계 개발이 필요함
- 국제관계설정계획은 실무중심적 실행계획으로 평가되나, 남서태평양 도서 국가를 포함하여 대양 진출을 모색하는 범지구적 또는 광역적 해양수산 협력 체제 구축에 관한 시도가 미흡함
-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로 수 배 확대된 영해역의 효율적 보전관리와 이용, 대양 진출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위상을 강화하고, 타 부처가 수행하는 유사한 기능과의 효율적인 연계성 확보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